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원 업무 수행 전문기관 지정〉

■ 이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580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원 업무 수행 전문기관 지정 (안 제8조의2제1항제1호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인선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5. 1. 16.

다. 회 부 일 : 2025. 1.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원 용역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외에는 입찰기관이 없어 실질적인 경쟁입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때문에 「국가계약법」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관련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위한 공고 등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재정법」 제8조의2 예비타당성 업무와 같이 기관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이들 기관이 「국가재정법」 상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안 제8조의2제1항제1호 신설 등).

II. 검토의견

1.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원 업무 수행 전문기관 지정 (안 제8조의2제1항제1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 지정 등 - <신 설> -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재조사와 그와 관련된 조사·연구 - 재정사업성과평가와 그와 관련된 조사·연구 - 기금운용평가단·재정성과평가단·부담금운용평가단·보조사업평가단 및 복권기금사업 성과와 관련된 평가단의 운영	○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 지정 등 - <u>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그와 관련된 조사·연구</u> - (이하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 재정사업 성과평가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두고 있음.¹⁾

1) 「국가재정법」 제8조의2(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그 조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2. 제5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및 그 조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3. 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그 평가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4. 제8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운영
5. 제85조의5제4항에 따른 재정성과평가단의 운영

6.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의 운영
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평가단의 운영

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구성하는 복권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단의 운영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

개정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그와 관련된 조사·연구 업무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제7조²⁾는 정부는 매년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관련한 지원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매년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여 국내외 재정동향에 관한 정보 수집·분석, 핵심 재정 아젠다에 대한 분야별 작업반 구성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음.

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전문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2)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기 재정전망 및 근거
3.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4. 재정규모증가율 및 그 근거

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4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의4. 세입·세외수입·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

5.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6.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망과 관리계획. 다만,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되는 기금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
2. 제73조의3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3. 제91조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4. 「국세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5. 제4항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 결과

(이하 생략)

그런데 위탁기관 선정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됨에도 실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외에는 입찰기관이 없어 매년 단독입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상황임.

[최근 10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원업무 위탁계약 현황]

(단위: 회)

연도	위탁기관	계약방식	연도	위탁기관	계약방식
2015	KDI	단독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2020	KIPF	단독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2016	KDI	"	2021	KIPF (KDI 공동수급)	"
2017	KDI	"	2022	KIPF (KDI 공동수급)	"
2018	KDI	"	2023	KIPF (KDI 공동수급)	"
2019	KIPF	"	2024	KIPF (KDI 공동수급)	"

자료: 기획재정부

개정안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외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원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매년 경쟁입찰 절차를 거침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또한, 계약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원업무의 착수시기를 앞당김으로써 한정된 기간 내에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³⁾

3) 개정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원업무는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외에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없어, 매년 경쟁입찰을 진행하나 단독입찰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으로 불필요한 행정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용한다는 입장임.

다만, 전문기관 지정에 따라 해당 기관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되어 새로운 기관의 참여가 더욱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전문기관 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방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1. (생략) 2. ~ 8. (생략) ② ~ ⑤ (생략) 제38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수요예측자료 등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 ----- ----- ----- ----- ----- ----- ----- ----- ----- ----- 1.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및 그 수립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2.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 ----- 제8조의2제1항제1호의2----- ----- ----- ----- ----- ----- ----- ----- -----

문 의 처

02)6788-5151